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김승수 · 김선교 · 이종배
이헌승 · 박정하 · 안철수
서천호 · 김은혜 · 김미애
구자근 · 김대식 · 정연욱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.

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

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제2호는 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